

[전문개정 2009. 4. 1.]

**제51조(과태료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1. 5.

24., 2015. 8. 11., 2015. 12. 29.>

1.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 운임 · 요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2. 제11조제1항에 따른 철도사업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철도사업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3.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
4.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개정 2011. 5. 24., 2015. 12. 29.>

1. 제18조에 따른 사업용철도차량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철도사업자

2. 삭제 <2018. 6. 12.>

3.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자

4. 정당한 사유 없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· 방해 또는 기피한 자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개정 2011. 5. 24.>

1.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

2. 삭제 <2018. 6. 12.>

④ 제22조를 위반한 철도운수종사자 및 그가 소속된 철도사업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개정 2011. 5. 24.>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 · 징수한다.<개정 2009. 4. 1., 2013. 3. 23.>

⑥ 삭제 <2009. 4. 1.>

⑦ 삭제 <2009. 4. 1.>

**제52조** 삭제 <2011. 5. 24.>

**부칙** <제20702호, 2025. 1. 21.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